

중소기업통합계약서

○

(갑) : ◎ 사업장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6층(청풍프라자)
◎ 상호 : 선우공업사
◎ 대표 : 주황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 : ◎ 사업장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 550)
◎ 상호 : 선우공업사 주식회사 (설립중인 회사)
◎ 발기인 대표 : 주황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6층(청풍프라자) 소재 선우공업사 (이하 "회사"라 칭함)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 550) 소재 선우공업사 주식회사는 조특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갑"과 "을"이 중소기업통합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의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중소기업통합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이 책임지고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3조 (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13년 12월 31일 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 하기로 한다.

제4조 (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검사인 등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② 위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으로 수정 평가 한다.

제5조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단,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종업원의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2013년 12월 31일을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2014년 1월 1일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4년 1월 1일로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제8조 (협조의무) "갑"은 "을"의 사업승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1월 12일

(갑) : ◎ 사업장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6층(청풍프라자)
◎ 상호 : 선우공업사
◎ 대표 : 주황규 印

(을) : ◎ 사업장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 550)
◎ 상호 : 선우공업사 주식회사 (설립중인 회사)
◎ 대표이사 : 주황규 印